

❖ 정부시책 ❖

## 벤처기업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통상산업부는 21세기 우리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를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 금융기관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4월 25일 동 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을 기술담보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후속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5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가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거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담보대상기술 및 대상자금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기법을 보완·개선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담보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 결과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기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중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기술금융제도는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 및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고, 기술거래시장 또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기술에 대한換價 및 처분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에서 기술담보제도를 민간금융기관이 스스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추진을 통해 기술

평가기법의 마련, 평가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기술담보제도가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향후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보의 대상기술을 특허권, 실용실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형태로 권리화되어 현행 법령상 담보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한정하되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무형의 기술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매출액대비 R & 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우선 통상산업부의 「산업기반자금」('97 : 3,211억원)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금년도 손실보전금의 조성규모로 보아 2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금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금을 다른 정책자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대출취급은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7.5%, 2년거치 포함 5년이내의 융자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으로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어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

업기술정책연구소」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기관내에 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보실』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작년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내에 “기술가치평가기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된 평가기법은 기술담보사업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담보시범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외에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평가기법개발,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향후 민간금융기관이 기술담보제도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이 발생하여,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을 매년 조성(금년도 20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담보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을 기술·지식집약형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가치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기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기업 特措法 입법예고

앞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액면가를 500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폐지된다. 또 비실명금융자산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연·기금과 신탁회사, 투신사, 보험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통상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 500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특별조치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비실명금융자산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은 출자된 비실명금융자산을 출자후 1년이내에 벤처기

업에 투자도록 하여 비실명금융자산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를 발행주식의 20%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늘리고 연·기금이 운용계획 범위내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토록 하며 신탁회사·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도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부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토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현행 1%에서 금융기관 수준인 2%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

화를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기술개발 예산의 일정율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간주하고 교수 및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토록 했다.

통신부는 기술연구화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단지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

법 등 다른 법률의 입지관련 규정의 적용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배제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입지관련 각종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통신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률 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율이 일정율이상인 업체, 특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규정했다.

## 공업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6. 12. 31)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및 도시형공장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도권내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공장설립 완료기간의 연장 및 임대공장의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를 '97. 5. 3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세제등의 각종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아파트형공장의 정의 : ① 3층이상  
② 6개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
- (2) 민원인이 특정입지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행정관청이 검토할 법령의 폭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등 토지이용관련 법령 만 검토
- (개정) 토지이용, 환경관련, 건축관

련법령등 공장설립 관련 모든법령을  
검토

(3) 공장설립완료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의 공장설립기간에 대한 부담  
을 경감

- (현행)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최장6  
년(4년+예외인정 2년)
- (개정)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최장8  
년(4년+예외인정 4년)

(4)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장의 설립절차  
를 새로이 규정

- 종전에는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명의로만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임대공장 건설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보완

(5) 개정법률에서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  
형공장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분  
류

• 도시형공장 :

- ① 대기관련 : 4~5종 사업장이고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없는 공장
- ② 수질관련 5종 사업장이고 특정수  
질유해물질이 없는 공장

• 비도시형공장 :

- ① 대기관련 1~3종 사업장이거나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있는 공장

② 수질관련 1~4종 사업장이거나 특  
정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공장

(6) 수도권내 첨단산업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

-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내 기  
존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시 기존  
부지면적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  
용
-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산업(7개업종)  
공장의 증설허용면적을 종전의 25%  
에서 50%로 확대
- 자연보전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공장이 폐수  
배출량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조  
건하에서 건축면적 50% 범위내의  
증설을 허용(관계부처간 未합의)
- 과밀억제지역에 위치한 구로공단내  
에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관련 시제  
품생산설비의 설치허용(관계부처간  
未합의)

(7) 개정법률에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  
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리비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

(8)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당  
해 산업단지별 여건에 따라 물류시설용  
도로 지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  
주기업의 물류편의를 도모

(9)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한국산업단지공  
단의 사업중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

- 공단의 업무 : 산업단지내 공동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력·자금·용수 등의 지원사업 등
- 유관기관과의 협력 : 공장설립관련 각종 인·허가지원 및 산업단지개발

등의 사업과 관련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 등과의 협력

- 동 개정령(안)은 '95. 5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종합기업 서비스 센터(Inno-NET) 업무 개시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기업서비스 센터』를 발족시켰다.

이 센터에서는 창업, 입지, 기술, 자금, 인력, 판로, 무역 및 투자, 기초공업, 생활공업 등 9개부문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산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창업투자회사, 신용보증조합, 은행 등 107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기관을 전자네트워크로 연결하는 Inno-NET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동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각 기관별로 지정된 전담자가 관련기관간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또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

부에 설치한 관계부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통상산업부 차관)에서 협의, 결정하므로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우선 전화, FAX, PC통신(E-mail)을 활용하여 5월 1일부터 가동토록 하고, Inno-NET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부터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 제도개선을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업, 창업인에게 전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기업입장에서 실제 담당자를 파악하고 제도이용방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종합기업서비스센터를 가동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부부처간 또는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을 돋는 새로운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기본취지로 한다고 밝혔다.

통신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 3월 31일 통신부장관의 대통령 경제분야보고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서비스체제로의 정부의 역할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 및 현업부처간 협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과천정부제2청사 3동(통상산업부 건물 116호)에 설치하였으며, 전화 503-2500, 500-2770~2, FAX 503-2506 또는 PC통신(E-mail)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이용시 퇴근이후에는 자동응답기를 가동하여 기업이 애로사항을 자동응답기에 녹음해 두면 다음날 출근 후 검토하여 회신해 주도록 하고, FAX도 24시간 개방하여 기업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의 통상산업부 및 9개 총괄기관의 자동응답전화번호, FAX번호, E-mail ID는 다음과 같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종합기업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으로 참여, 전기공업 분야의 창업 및 기술·자금 지원 등에 대한 애로요인을 수시로 접수해 결하고 정부에 대한 견의내용은 기업활성화 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 ■ 종합기업서비스센터 총괄기관별 자동응답 연락번호

기 관 명	자동응답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WEB)
통상산업부	503-2500	503-2506	천리안 Innonet
중소기업청(인력)	503-7929	503-2512	<a href="http://www.sm">http://www.sm</a>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 자금)	769-6652, 6631	769-6708, 6657	<a href="http://www.smi.pc.or.kr">http://www.smi.pc.or.kr</a>
중소기업중앙회(판로)	786-4311	786-4310	천리안 jokfsbl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	829-7373	829-7367	천리안 KIC126
생산기술연구원(기술)	853-8142	861-1785	1dk56@mail.kit
KOTRA(무역 및 투자)	551-4222	551-4463	<a href="http://www.kot">http://www.kot</a>
한국기계공업진흥회(기초공업)	369-7810	369-7898	천리안 koami 하이텔 KOAMT
한국섬유산업연합회(생활공업)	528-4068	528-4069	천리안 KOFOTI 하이텔 KOFOTI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기분야 지원기관)	3476-0271	3476-0275	<a href="http://www.KOEMA.ORG">http://www.KOEMA.ORG</a>

## ISO 9000 인증제 民間자율 전환

오는 6월 1일부터 ISO 9000(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관광함에 따라 민간자율의 인증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ISO 9000 인증제도 운영을 민간자율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기관·연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ISO 9000 인증은 현재 30여개의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을 인증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하였으나 이번에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정부로부터 이 인정업무를 위탁받게 됐다.

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ISO/QSAR (Quality System Assessment Recognition)에 의한 국제상호인정이 본격 실시될 예정인데 정부가 인정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민간기구인 QSAR로부터 정부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ISO 9000 인정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정부에서 ISO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전적으로 민간 자율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통신부는 “ISO 9000 인증제도가 민간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ISO 인증에 관한 국제상호인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외국에서도 통용되어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에는 기업의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에 대해 정부 포상과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국립기술품질원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인증기관·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공산품 안전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토록 했다.

한편 ISO 9000 인증제도가 지난 '93년 시행된 이래 '97년말 현재 국내인증기관 14개, 외국인증기관 15개 등 29개의 인증기관에서 2505건의 인증이 이루어져 ISO 인증제도가 국내업체들의 경영체제개선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확정

통상산업부는 최근 「제2차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금번 민자발전 대상사업은 45만kW급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로서, 각각 2003년 및 200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2차 민자발전사업은,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저전압 현상으로 전력수급 애로를 겪던 대구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사업의 특징은, 지난 1차 산업시 제기되었던 부지문제 등 제반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사업시 부지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심사를 통하여 이미 선정된 업체가 사후에 탈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중 부지관련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사전에 신청업체의 대상부지가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충

분히 협의토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부지관련 요건의 강화에 따라 신청업체가 부지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업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부지를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관련 시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환경관련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셋째, 가격부문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한전이 단독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복수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최종적인 예정가격은 신청업체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결과가 지나치게 가격부문의 평가결과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상의 가격 대 비가격 부문의 비율을 1차사업시의 6 : 4에서 5 : 5로 조정하였다.

넷째, 평가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장을 한전 직원이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전문가로 임명토록 하고, 평가위원회에 예정가격 및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과 사후 분쟁발생시의 1차적 판단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각종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전시설 공사비 및 전력수급계약의 수용정도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전과 신청업체간의 공평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통상산업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금년 6월경 사업제의요청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11월경 사업참여업체의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금년말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 通產部, ‘2010년 한국산업기술예측사업’ 실시

통상산업부는 오는 ’2010년에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첨단산업 기술을 도출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2010년 한국산업 기술 예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신부 주관아래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실시하는 이 사업은 2천년대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기술을 미리 파악해 개발을 촉진, 기술선진국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장기적 기술개발 대상을 제시하여 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예측사업은 5月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 대학·기업·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참석, 광범위하게 국내외 예측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기술

의 고도화·융합화·과점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며 여기서 도출된 과제는 통산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으로 중점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통신부는 이 사업에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적인 기술변동요인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여론수렴방법인 멜파이기법을 2차례에 걸쳐 수행,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10년의 산업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외에 국내 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예측전문위원회가 사회경제적 거시환경을 분석,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략산업과 기술개발 방향 및 전략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통신부는 올해 하반기중에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중에는 미래의 산업기술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이 '91년, 일본 '92년, 독일 '93년, 영국 '94년에 기술예측사업을 완료하고 예측결과를 자국의 기술개발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 韓電 잠정표준 구매시방서 개정공포 ▣

-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잠정표준 구매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정내역 및 시행일자

- 지상설치형 변압기(PS 147-050~167) :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시행

- 공포일자 : 1997. 4. 23